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83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김상훈 · 김선교 · 윤한홍
이현승 · 진종오 · 서천호
고동진 · 최수진 · 엄태영
이인선 · 성일종 · 강대식
조은희 · 안철수 · 신동욱
김용태 · 조승환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거 사드 사태 등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 등도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뿐만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판로개척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출기업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을 “통상조약”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
나.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에 관한 조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①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4.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u>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통상조약</u> -----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조약 등”이란 「 <u>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	제2조(정의) ----- -----. 1. ----- <u>다음</u> <u>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는 것으로서</u> ----- ----- ----- -----.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2. 3. (생 략)

<신 설>

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
나.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에 관한 조치

2. 3. (현행과 같음)

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 개척 지원) ①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u>4.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u> <u>5.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u> <u>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u> <u>·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